

<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>

2015. 01. 30. - 공소제기

2016. 01. 08. - 1심 선고 : 전원무죄

2016. 01. 11. - 검사 항소

2016. 08. 12. - 항소심 선고 : 항소전부기각

2016. 08. 18. - 검사 상고

<검사 구형>

전 대표이사 - 징역 2년

전 부사장 - 징역 1년 6월

전 신유통서비스본부 본부장 - 징역 1년 6월

전 보험서비스팀 팀장 3명 - 징역 1년

보험사 제휴마케팅 차장 2명 - 징역 1년

홈플러스 주식회사 - 벌금 7,000 만원, 추징 231억 7,000만원

<검사 항소이유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>

1.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

- 1)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59조 위반 (법리오해)
- 2) 정보주체의 의사 (사실오인)
- 3) Imm의 글씨크기 (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)
- 4) 생년월일, 자녀 수, 부모님 동거여부 등 불필요한 정보 (법리오해)
- 5) 경품 미지급 (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)
- 6) 보험업법 위반
- 7) 사행행위에 해당

<검사 항소이유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>

2. 사전필터링

- 1) 사전필터링이 누구의 업무인가 (사실오인 내지 범리오해)
- 2) 사전필터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(사실오인 내지 범리오해)
- 3) 위탁의사 유무, 업무위탁계약 유무 (사실오인 내지 범리오해)

<항소심 법원판단의 문제점>

1. 경품행사 관련

- 개인정보자기결정권, 정보주체의 동의권 형해화
- 정보주체에게 책임 전가

2. 사전필터링 관련

-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의적 해석
- 결국 기업에 손들어주는 결과 초래

3.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 미흡

- 대부분 과태료 규정에 불과, 형사처벌에 이르러야